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지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호
----------	-----------

제출년월일 : 2022. 3.

발 의 자 : 명지선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나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명지선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나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제14조 ~ 제19조 (생략)

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 제20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